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설립일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법인등록번호	
	전화번호	전자우편	
	사무소 소재지		

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.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.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